

#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비준 및 관리방법 완화

(14. 6. )

상해사무소

## 1 변경 개요

-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'14. 1월 '외상투자 프로젝트심사 비준 및 관리방법(초안)'(이하 "관리방법") 발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'외상투자 프로젝트심사 비준 및 관리방법'을 '14. 5. 21일에 확정
  - '관리방법'은 '14. 6.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'04. 10월 발표하여 시행했던 '외상투자프로젝트 심사비준 임시관리방법'(이하 "임시관리방법")은 폐기
- 본건은 기 발표 된 '정부비준의 투자프로젝트 목록(政府核准的投資項目目錄(2013))(이하 "프로젝트 목록")을 기반으로 투자금액 및 외상투자산업목록에 근거, 비준권자 등을 구체화 하였으며, 비준 필요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등록제 도입

## 2 변경내용

- (등록제 도입) 과거 '임시관리방법'은 모든 외국인 투자는 프로젝트 비준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나,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중국정부가 지정한 비준이 필요한 분야\*를 제외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 프로젝트 등록으로 대체
  - \* '정부비준의투자프로젝트목록(政府核准的投資項目目錄(2013))'에 기재된 분야
- (비준관련 금액 및 비준권자 조정) 비준의 기준이 되는 총투자 금액 및 비준권자 조정
  - 일례로, 이전에는 3억 달러 이상 장려산업 프로젝트의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비준을, 5억 달러 이상 장려산업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비준 이후 국무원 비준을 받게 되어 있음
  - '관리방법'에는 5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도 국무원 비준을 생략하는 등 비준관련 금액 및 비준권자 조정

**외상투자 프로젝트심사 비준 및 관리방법 관련 변동 사항**

구분	과거 <sup>주)</sup>	변경 후
핵심 내용	모든 분야 비준 필요	분야에 따라 제한적 비준 및 등록
세부 내용	<p>○ ‘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’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총투자액 3억 달러 이상의 장려산업, 허가산업 프로젝트 및 5,000만 달러 이상의 제한산업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비준 필요</li> <li>- 그 중 총투자액 5억 달러 이상의 장려산업, 허가산업과 총 투자액 1억 달러 이상의 제한산업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비준 후 국무원의 비준 필요</li> <li>- 총투자액 3억 달러 미만의 장려산업, 허가산업과 총투자액 5,000만 달러 미만의 제한산업은 지방 발전개혁위원회의 비준 필요. 그중, 제한산업의 경우 성급 발전개혁위원회에서 비준하며 하부로 위임 불가</li> </ul>	<p>○ ‘정부비준의 투자프로젝트 목록’에 근거, 해당산업 프로젝트의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‘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’ 상 중국측 다수지분이 필요한 3억 달러(증자포함) 이상의 장려산업 프로젝트, 총 투자액 5,000만 달러(증자포함) 이상의 제한산업(부동산 제외)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비준</li> <li>- ‘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’ 상 제한산업 중 부동산 프로젝트 및 총 투자액 5,000만 달러(증자포함) 미만의 기타 제한산업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가 비준</li> <li>- ‘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’ 상 중국측 다수지분을 요구하는 총투자액 3억 달러 미만(증자포함)의 장려산업 프로젝트는 지방정부가 비준</li> <li>- 지방정부 비준항목 중 성급정부 비준 프로젝트는 하부로 위임 불가</li> </ul> <p>○ 기타산업 : 등록</p>

주 : ‘04년 임시관리방법 발표 이후 비준관련 금액 등은 외자이용 개선에 관한 국무원 의견(國發[2010] 9号, ‘10. 4. 13) 등을 통해 조정

자료: 상해사무소 정리

### **3 시사점**

□ 이번 정책은 외국인 투자시 프로젝트의 무조건적 비준 필요(all round approval)에서 분야에 따라 비준(limited approval) 및 등록(general registration)으로 구분하였으며, 비준관련 금액 상향, 비준권 하향 등 규제를 완화 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

- 기업들은 투자 검토시 ‘관리방법’ 뿐만 아니라, ‘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’, ‘정부비준의 투자프로젝트 목록’등을 검토하여 관련산업 및 총투자금액에 따른 비준 필요 여부, 비준권자 등을 확인해야 함
  - 다만, ‘관리방법’의 내용 중 등록과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인 방침이 발표되지 않아 정착되기 까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
- 부가적으로, 향후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는 점차 간소화 되며 중국기업과 동일한 법을 적용받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할 예정
  - 중국의 외상투자 관련 법은 ‘외자기업법’, ‘중외합작경영기업법’, ‘중외 합작경영기업법’이 있으며, 이 법률들이 현재 외국인투자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
    - 상기의 3개 법률은 모두 ‘01년 전후 수정된 이후 10년이 경과하여 현재의 법규들과 상충되는 점이 있을 수 있음
  - 상무부 외국인투자 담당 부국장은 ‘13년 국제투자 관례 및 원칙과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에 대한 수정을 실시할 것을 시사
  - 최종적으로 외국인투자관련 법률을 폐지하여 ‘회사법’으로 통합되고, 장기적으로는 장려/허가/제한/금지의 포지티브(positive) 방식에서 네거티브(negative)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 유력

- 첨부 : 1. 정부비준의 투자프로젝트 목록(2013)  
 2. 외상투자 프로젝트 심사 비준 및 관리방법. 끝.

[자료: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웹사이트, 신화사, 第一財經日報 등]